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결 정 문

사건번호: KR-2100232

신 청 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대리인 : 특허법인 성암)

피신청인: 맹상영

분쟁 도메인이름 : sktcloud.com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5 (을지로 2가)
대리인 : 특허법인 성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14 (역삼동, 현죽빌딩 9층)

피신청인: 맹상영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86, 4층

분쟁 도메인이름은 "sktcloud.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주)닷네임코리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B동 4층(삼평동))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21. 9. 2.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 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21. 9. 7.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21. 9. 7.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21. 9. 7.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21. 9. 27.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은 의견서 제출 기일 연장을 두 차례(1차:2021. 10. 6., 2차:2021. 10. 20.) 요청하였고, 2021. 11. 4.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21. 10. 5.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이덕재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2021. 10. 5.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21. 10. 6.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1984년 설립된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가 1994년 선경그룹(현 SK그룹)에 인수된 후 1997년에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법인이다. 2) 신청인의 모회사인 “에스케이 주식회사”는 2003. 7. 15. 대한민국특허청에 “**SK Telecom**”을 제38류 컴퓨터통신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하였고, 2011년부터 “ **SK telecom** ”을 제38류, 제7류, 제9류 등 다수의 상품류에 상표등록을 하였다.

- 3) 신청인은 위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SK텔레콤", "SK Telecom" 및 "SKT"를 상호 또는 상호의 약칭으로 널리 사용해왔다(이하에서 상표권자인 "에스케이 주식회사"와 사용권자인 신청인을 합하여 "신청인측"이라 한다).
- 4) 신청인측은 2019부터 "**SKT**"를 제9류, 제12류, 제28류, 제38류 등의 상품류에 상표등록을 하고 사용해 왔다.
- 5) 이 건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호의 약칭이자 신청인측 등록상표인 "**SKT**"와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다.
- 6) 피신청인은 이 건 도메인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에 "엔클라우드24 URL 단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하면서, "엔클라우드24는 가장 오래된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사업자로 KT Cloud, 아마존 AWS, Naver Cloud Platform, 알리클라우드 등 멀티 클라우드를 지향하며, 고객의 니드에 맞는 클라우드를 제공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7) 신청인은 2009년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신청인측의 상표등록 제40-1486319호(표장: **SKT**, 등록일: 2019. 6. 5.)의 지정상품에는 "소프트웨어 등"이, 제40-1394560호(표장: **SKT**, 등록일: 2018. 9. 5.)의 지정상품에는 "클라우드컴퓨팅업, 서비스형 플랫폼 제공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신청인이 이 건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위 신청인측이 상표등록한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
- 8) 피신청인은 신청인측과 무관한 제3자이며 이 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 9)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건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이 건 도메인이름 등록일 이전에 신청인측은 제38류 컴퓨터통신업, 핸드폰통신업 등 통신업 분야에만 상표등록을 하였을 뿐 클라우드서비스 분야에는 등록하지 않았다.

- 2) 신청인측에서 2009년에 구축하였다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은 한국 IBM의 서비스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며,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 3) 신청인측은 "SKT클라우드" 서비스를 일관성있게 제공하지 않았다.
- 4) 10여년 동안 피신청인이 관리해 온 이 건 도메인이름을 아무런 관리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조정절차에 의하여 이전받는 것은 부당하다.
- 5) 신청인측은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측 그룹의 계열사인 "SK C&C"에서 제공하는 CLOUD Z의 협력사로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6)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이 건 도메인이름의 유사

이 건 도메인이름에서 ".com"을 제외한 "sktcloud"는 신청인측의 등록상표 및 상호의 약칭인 "skt"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과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하는 "cloud"를 결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cloud"는 식별력이 없고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는 "skt"가 신청인측 등록상표인 "**SK**Telecom",


 및 "**SKT**"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신청인의 상호의 약칭인 "SKT"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건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측의 등록상표 및 상호의 약칭과 유사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skt" 또는 "sktcloud"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 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측 그룹의 계열사인 "SK C&C"에서 제공하는 CLOUD Z의 협력사로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sktcloud"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보유할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이전에 "SKT"는 신청인의 상호의 약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이전에 신청인측이 등록한 상표 "**SK Telecom**"과 이 건 도메인이름은 유사하며, 이 건 도메인이름 등록 이후에 신청인측이 등록한 상표 " 및 "**SKT**"와 이 건 도메인이름도 유사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측의 상표 또는 상호의 약칭과 유사한 이 건 도메인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분야인 "URL 단축서비스, 클라우드 매지저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신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청인측의 상표 또는

상호의 약칭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여 신청인측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 이 건 도메인이름 등록 이전에 신청인측이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2) 신청인측에서 2009년에 구축하였다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은 한국 IBM의 서비스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은 점, 3) 신청인측이 "SKT클라우드" 서비스를 일관성있게 제공하지 않은 점, 4) 이 건 도메인이름이 등록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인 측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5) 신청인측은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측 그룹의 계열사인 "SK C&C"에서 제공하는 CLOUD Z의 협력사로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도메인이름이 그 등록 이전에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호의 약칭 및 신청인측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이 건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서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신청인측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상, 피신청인이 이 건 도메인이름을 선점하여 신청인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sktcloud.com>을 이전 할 것을 결정한다.



1인 행정패널

이덕재

결정일: 2021년 12월 8일